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292호

의 안 명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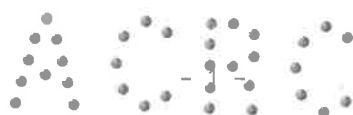
의 결 일 2021. 5. 24.

주 문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중앙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5월 24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이정희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응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옥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별지]

국민의 생활을 위한 정부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2021. 05.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10

I. 추진 배경

- 농·임·어업인(이하 “농어민등”)의 부담 경감 및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농어민 등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 혜택* 제공(「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면세액) 통상 휘발유 870원/리터, 경유 630원/리터 수준

※ (공급 규모) '19년 기준 약 25억 리터 공급

- 그동안 ‘면세유’는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임·어업 정상화에 기여*해 왔으나, 유통·관리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 발생

* 면세유를 통한 지원 규모(억원) : 13,490('17년) → 13,618('18년) → 13,865('19년)

- 농어민 등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혜택을 면세유 판매자가 중간에서 편취하는 사례 발생

※ 경북 소재 ○○주유소는 실제 면세액(870원 수준)과 달리 휘발유의 리터당 면세액이 459원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어업용 면세유가 당초 제도 취지를 벗어나 공급되거나, 조업정지 어선에 지급되는 등 부당한 면세유 지급 통제 미흡

※ 낚시어선업 영업일수, 면세유 지급한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면세유가 지급되거나, 조업정지 어선에 면세유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 지급사례 발생

- 면세유류 관리기관(중앙회, 조합)이 면세유 공급명세*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접근성 저하

* 석유제품별 전년도·월별 공급량, 사용 시설·농기계 현황 등

- 이에 따라, 면세 혜택이 농어민 등에게 올바르게 돌아가고 면세유 공급·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II. 제도 현황

□ 일반 현황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연혁)** '72년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시작된 이래, '86년 농업용, '02년 임업용까지 면세유 공급 확대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 '21.12.31.까지만 유효(일몰규정)

- **(면세 대상)** 농어민등이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로서, 어업용 선박·시설,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42종), 임업기계(동력 기계톱, 천공기 등 10종), 어업기계(어업용 경운기, 어망세척기 등 6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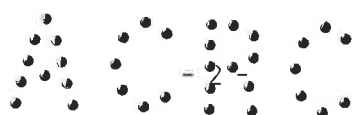
※ 면세 혜택이 특정 시설, 기계 등에 한정됨에 따라,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보유(임대) 시설, 기계 등을 조합에 신고해야 함

- **(면세 항목)** 부가가치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세

<유종별·항목별 면세액>

(단위 : 원)

석유류	정액세				정률세
	교통세	개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휘발유(L)	529.00	-	교통세의 15% (79.35)	교통세의 26% (137.54)	공급가격의 10%
경유(L)	375.00	-	교통세의 15% (56.25)	교통세의 26% (97.50)	
등유(L)	-	63.00	개소세의 15% (9.45)	-	
중유(L)	-	17.00	개소세의 15% (2.55)	-	
LPG일반(kg)	-	275.00	개소세의 15% (41.25)	-	
LPG차량(kg)		160.00	개소세의 15% (24.00)		



□ 면세유 관리

- 제도(중앙관서), 공급관리(농·수협 및 산림조합), 단속·사후관리(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로 기능별 체계화

구분	기관	기능(역할)
제도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령 운영 ※ 면세대상 항목, 배정·유통 관리, 관리기관별 역할 등 기본적 사항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 운영
	국세청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고시) 운영
	해양수산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훈령) 운영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고시) 운영
공급관리	농·수협, 산림조합	농·임·어업기계, 시설 등 신고 접수, 면세유 배정, 공급(판매) 등 면세유 관리
사후관리(단속)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 농어민등이나 면세유 판매자(주유소 등)에 대한 조사·단속 및 관리기관(중앙회,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 어업관리단장(수협),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면세유 판매자의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 점검(지자체장)

□ 면세유 공급 현황

- (공급 대상) '19년 총 119.1만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
 - ※ 농협 102만, 수협 11.4만, 산림조합 5.7만 명 대상
- (공급자) : '19년말 현재 전국 6,879개 판매시설을 통해 면세유 공급
 - ※ 농협 6,623개, 수협 256개, 산림조합 1,260개(농협과 중복) 주유소 등



○ (공급량) : 면세유 공급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년에는 총 **24.9억 리터**의 면세유류를 농어민 등에게 공급

※ 농협의 경우 면세유 공급이 피크였던 '05년도의 26억 리터 대비 '19년에는 54% 수준인 14억리터 수준으로 감소

<공급 현황>

(단위 : 만리터 / 억원)

연도	유종	공 급 량 ¹⁾				면세액 (지원액)
		농협	수협	산림조합	계	
2017	휘발유	8,110	10,000	573	18,683	13,490
	경유	76,426	95,800	24	172,250	
	기타	52,370	3,000	-	55,370	
	합계	136,906	108,800	597	246,303	
2018	휘발유	8,353	9,800	585	18,738	13,618
	경유	81,650	91,000	24	172,674	
	기타	53,233	2,700	-	55,933	
	합계	143,236	103,500	609	247,345	
2019	휘발유	9,756	10,200	597	20,553	13,865
	경유	82,494	95,500	25	178,019	
	기타	48,439	2,200	-	50,639	
	합계	140,689	107,900	622	249,211	

1) 최근 3년 면세유 공급량의 기관별 비중을 보면, 농협이 56.7%, 수협이 43.1%, 산림조합이 0.2%를 차지, 공급 유종별 비중을 보면 경유가 70.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임(휘발유 7.8%, 기타 21.7%)

III. 문제점

1 면세유 부정 판매

□ 면세유 판매자로 지정 받은 주유소의 면세액 임의 산정

- 판매자는 유종별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석유류 가격표시제등 실시 요령」 제12조)
- 그러나, 관리기관으로부터 면세유 판매자로 지정받은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액 산정 근거*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세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판매
- * 석유류에 대한 면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유종별로 상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이로 인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혜택의 일부가 면세유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결과 초래

< 관련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20.8월) >

- 경북 소재 ○○주유소의 일반 경유 판매가는 1,159원으로, 이 경우 면세액은 634원, 판매가는 525원이 되어야 하나, 판매자는 먼저 판매가를 임의로 설정(950원)하고, 정상가격과 판매가의 차액(209원)을 면세액으로 표시
- 충북 소재 ○○주유소의 일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399원으로, 이 경우 면세액은 873원, 판매가는 526원이 되어야 하나, 면세액을 399원으로 임의 설정하고 1,000원에 판매

□ 허위 가격 표시 방지를 위한 지자체 관리·감독 근거 미흡

-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관리·감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면세액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시정조치 등 곤란

※ 관련 규정에서 면세유 가격표시 항목(방법)만을 정하고 '면세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지도·단속 어려움(○○시 담당자 의견)

□ 낚시어선에 대한 과도한 면세유 제공으로 제도 도입취지 훼손

- 어한기(漁閑期) 영세 어민의 소득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낚시어선**에 대하여 면세유 제공(「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제15조제1항)

* 지급기준 : 연간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수산물 판매실적 120만 원 이상(택1)

** 어장 관리선 또는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낚시어선업’ 신고

- 면세유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출항 여부, 조업실적 등에 관계없이 면세유를 지원

※ 면세유 지급기준(60일/120만원)은 2009년 설정된 ‘어업인’ 기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판매금액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지급기준이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상당수 낚시어선이 본업인 ‘조업’보다 ‘낚시 영업’에 치중함으로써, ‘어한기 소득보전’이라는 당초 취지·한계를 벗어나 사실상 ‘레저 영업’에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부당한 결과

※ 최근 낚시 붐과 맞물려,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이 사상 최고(4,815천명, '19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도 급격히 증가('20년 기준 54,655kl로 '13년(8,791kl) 대비 622% 증가)

- 또한 지나친 낚시어선 영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및 면세유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민원 지속

< 관련 민원 사례 >

- 낚시어선이 면세유를 받아가면서 온갖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하여 허가받은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로 있으니,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국민신문고, '19.3월)
- 어업권을 매수하여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돈이 되는 낚시 영업만 하면서 매년 할당된 면세유를 받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환수 및 강력한 처벌 필요(국민신문고, '17.10월)

□ 어업정지 처분 선택에 대한 면세유 지급

- 면세유류 관리기관(수협)은 어업정지 처분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지급할 수 없음(「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제20조제8항)

*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당초 처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면세유 지급 정지

- 이를 위해 지자체(시·군)는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내역을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에 통보(「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수협은 이를 근거로 해당 어민에 대한 면세유 지급을 정지

- 그러나, 관련 규정이 '통보 기한', '어업정지 기간' 등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아 부당한 면세유 지급 통제 불가

※ 지자체의 처분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어업정지 기간 개시 후 통보 등)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협은 어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어민에 대하여 면세유 지급정지 등 적절한 조치 불가

< 관련 사례 >

- ○○군은 관내 허가어선 △△호에 대하여 어업정지 30일('19.6.20.~7.19)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어업정지 처분 개시일인 '19.6.20.(09시 이후)에 그 처분내역을 관할 수협에 통보함에 따라 어업정지 기간 중('19.6.20. 새벽출항) 부당하게 면세유가 지급됨
- ◇◇시는 관내 허가어선 □□호에 대하여 '16.2.4.~2.23. 기간 중 어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관할 수협에 그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어업정지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부당하게 면세유가 지급됨(이상 권익위 이행점검, '21.1월)

□ 면세유 사용 시설·기계 미신고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어업인 제외

- 면세유 사용 시설·기계를 해당 조합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 다만, 미신고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급이 가능하되, 이러한 사유에 해당 여부 확인 방법·절차 등은 소관기관에서 정하도록 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11항)

* 천재지변, 재해·도난, 3개월 이상 질병, 중상해·사망 등

- 이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의 확인 절차·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업인의 경우 해당 규정 미비로 구제 곤란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 제4조(농림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침 제5조(산림청)

< 관련 규정 >

-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부 고시) 제4조)
- 신고기간 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질병·해외여행·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침」(산림청 고시) 제5조)

□ 농협만 면세유 판매시 별도의 수수료 부과 · 징수

- 면세유 공급 · 관리 비용에 차이가 없는데도, 관리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 농협에 대해서만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리기관 간 형평성 저해

< 관련 규정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중략)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7항)
-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제23조제1항)

- 농협 내부에서도 단위 조합 간 징수 차별 및 차별적 징수에 따른 민원 발생

※ 전국 2,011개 단위 조합 중 154개(7.7%)만이 취급수수료 징수('19년 기준)

< 관련 민원 >

- 대부분의 농협(단위 조합)은 면세유 구매 시 카드 수수료만 받는데, 일부 조합은 카드 수수료 외에 자체 취급 수수료까지 별도로 받고 있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국민신문고, '16.11월)
- '08년부터 10년 이상 농업용 작업기에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바, 농업용 면세유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면세유 1리터당 1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개선 필요(국민신문고, '18.3월)

□ 면세유 관리 현황 공개 주체를 중앙회가 아닌 조합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 명세의 공개 주체를 **중앙회, 조합으로 함께 규정**

※ 부정사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면세유 관련 정보의 공개 제도 도입('07.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그러나, 대통령령인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는 **중앙회가 아닌 조합에 대해서만 세부 공개 항목을 규정**

- 이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3개 중앙회**(농협, 수협, 산림조합) 모두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연간 면세유 전체 공급량 등 단순 통계 정보조차 파악 곤란

- **상당수의 조합 역시 면세유 공급명세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 중앙회로부터 면세유 공개 관련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어 실제로 홈페이지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음(○○농협,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련 규정 >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8항)
-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제20조의3)

□ 공개의무 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 면세유 관리기관인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면세유 공급명세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20조의3)
- 그러나, 공개대상 항목에 면세유 수급 농어민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민감 정보가 공공연하게 노출·악용될 우려

< 관련 규정 >

-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제20조의3)

※ 실제 ○○수협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유 수급 어민의 실명, 소유 선박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 위험 상존

<개인정보 공개사례>

이름	선박명	유종	단위	2019년	2020년			
				총계	6월	7월	8월	9월
순	호	고경유	리터(LTR)	15,600	0	0	0	0
섭	진	고경유	리터(LTR)	22,000	2,600	2,200	1,800	2,200
웅 외1인	호	유압유	페일(PL)	61	53	0	30	0
옥	호	고경유	리터(LTR)	5,400	600	0	0	0
신	호	저경유	리터(LTR)	10,900	0	0	0	0
중	호	CJ4급	페일(PL)	18	3	0	0	0
근	호	고경유	리터(LTR)	3,147,200	425,400	349,200	256,800	242,600
봉	광	CJ4급	페일(PL)	7	0	0	0	0
호	호	고경유	리터(LTR)	2,940,200	325,000	400,800	261,200	188,000
규	호	고경유	리터(LTR)	4,800	400	0	0	0

(출처 : ○○수협 홈페이지)

IV. 제도개선 방안

1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감독 근거 명확화

□ 유종별 면세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3]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선 안				
[별표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별표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유종	정상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 가격	기타(배 달료 등)	유종	정상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 가격	기타(배 달료 등)
휘발유	○○○○원	○○원	○○○○원	-	휘발유	○○○○원	○○원	○○○○원	-
경유	○○○○원	○○원	○○○○원	<예시> 정액 : ○○○원 거리별 : ○○○원 /km	경유	○○○○원	○○원	○○○○원	<예시> 정액 : ○○○원 거리별 : ○○○원 /km
등유	○○○○원	○○원	○○○○원	<예시> 정액 : ○○○원 거리별 : ○○○원 /km	등유	○○○○원	○○원	○○○○원	<예시> 정액 : ○○○원 거리별 : ○○○원 /km
※ 면세유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 면세유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면세액은 제2조제9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산정예시) - 휘발유 : 교통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와 부가가치세의(10%) 합계액 - 경유 : 교통세(375원), 교육세(56.25원), 주행세(97.5원)와 부가가치세의(10%)의 합계액 - 등유 : 개별소비세(63원), 교육세(9.45원)와 부가가치세의(10%)의 합계액				

□ 면세유 판매자의 '면세액'에 대한 표시 적정성을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 판매자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에 대한 농어민 등의 신고 활성화 확산

※ 동 고시의 모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

⇒ 「석유류 가격표시제등 실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12조(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① 가격표시의무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가격표시판과 별도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① ----- ----- ----- ----- -----.
②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는 별표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방법 예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유종별 면세유정상가격, 면세액 및 면세유판매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③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은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
④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 -----.
⑤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 -----.
<신 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가격표시의무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면세유 판매자(주유소)의 허위 표시, 부정유통 등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면세유 판매자 지정취소,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이상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조세범처벌법 §4) 부과 가능

2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통제 강화

□ ‘영세어민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낙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 (예시 1) 60일 이상 또는 120만원 이상 → **60일 이상 & 120만원**

(예시 2) 면세유가 지급되는 낙시영업(낙시출항)일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
 (예 : 실제 조업일수 범위 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면세유 지급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대통령령)에 반영

< 개정(안) 예시(1) >

현 행	개선안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 라. (생략) 마.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낙시어선업용 선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낙시어선업용 선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 _____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예시(2) >

현 행	개 선 안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 라. (생략) 마.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낙시어선업용 선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 ----- ----- ----- 1.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낙시어선업용 선박으로서 낙시어선업 영업일이 전년도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날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어업정지 처분 선택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장치 마련

⇒ 「수산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생 략)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 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생 략)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수 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어업등행정 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어업등 행정처분의 개시일 이전에 그 처분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 라 어업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 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사용 시설·기계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어업인에 대한 공급 규정 마련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13조(어업기계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어업인은 2년마다 면세유류관리 기관이 정한 기간에 어업기계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 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 년 신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3조(어업기계 등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 ④ 어업인이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어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 대 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해, 질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 기관은 현지조사 등 확인을 거쳐 어업인이 신고기간 경과로 인한 손 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⑩ (생략) ⑪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⑫ ~ ⑮ (생략)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삭제> ⑫ ~ ⑮ (현행과 같음)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삭제>

5 면세유 관리 현황 공개 제도 정비

-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로서 중앙회를 명시하고, 중앙회의 공개 항목 명확화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대통령령)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신 설>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면세유 판매자 현황 5.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6. _____ 7. _____ •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생 략)	

- ☐ 조합에 면세유 공급 명세 공개 관련 지침 제공

⇒ 3개 관리기관 업무 지침(업무 안내, 매뉴얼)에 반영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1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 제24조,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8조의2에 의한 교육 시 각 조합에 제공하는 업무 지침(안내, 매뉴얼)에 ‘공개’ 관련 사항 추가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제거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대통령령)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u>법 제106조의2제8항에</u>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u><신 설></u>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u>법 제106조의2제8항에</u> ----- ----- -----, 1. ----- ----- 2. ----- ----- 3. ----- 4. ----- 5. ----- ② <u>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u>

V.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중앙회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면세액 허위 표시 방지 및 관리·감독 근거 명확화	▪ 유종별 면세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 ▪ 면세유 판매자의 면세액에 대한 표시 적정성을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22.11.
②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통제 강화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 기준 강화 ⇒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개정 ▪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23.5. '22.5.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③ 어업인에 대한 공정한 면세 혜택 제공	▪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사용 시설·기계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어업인에 대한 공급 규정 마련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 관리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개정	해양수산부	'21.11.
④ 면세유 취급 수수료 징수 폐지	▪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23.5.
⑤ 면세유 관리 현황 공개 제도 정비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로서 중앙회를 명시하고, 중앙회의 공개 항목 명확화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23.5.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관련 지침 제공 ⇒ 3개 관리기관 업무지침(업무 안내, 매뉴얼)에 '면세유 공급 내역 공개' 관련 사항 반영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중앙회	'21.11.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제거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23.5.

정 본 입 니 다 .

2021. 5. 25.

국 민 권 익 위 원



A C B C